

#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 안내



## 납세자보호 위원회

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의 권리침해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국 모든 세무관서에 설치되었습니다.

2008년 지방청·세무서에 설치 ⇒ 2014년 법제화 ⇒ 2018년 4월 국세청에 설치

## 납세자보호 위원회 구성

-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(담당)관과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, 세무사, 공인회계사, 교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- 특히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기재부 등 외부기관이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·운영됩니다.

## 납세자보호 위원회 심의

### ● 지방청·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

- ① 위법·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무공무원의 위법·부당한 행위
- ② 중소규모 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·범위 확대에 대한 이의 제기
- ③ 대규모 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·범위 확대
- ④ 장부 등의 일시 보관 기간 연장
- ⑤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(고충 민원 등)

\* 납세자는 ① ~ ② 항목에 관한 의견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.

### ●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

지방청·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정(위 ①~③ 항목)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세청장(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)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## 세무조사권 남용 근절을 위한 제도 (2018. 9. 3 시행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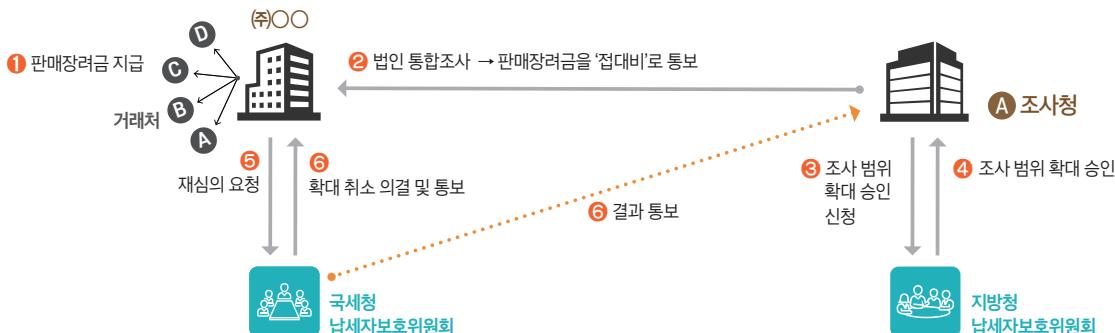
-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조사 공무원의 행위를 **위법·부당한 것으로 의결**하면 조사 대상자는 조사팀 교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영세자영업자는 세무조사를 받을 때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세무조사 입회를 신청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
#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사례

## 사례 1

명백한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세무조사 범위 확대 승인 결정을 취소



### 요청인의 심의 요청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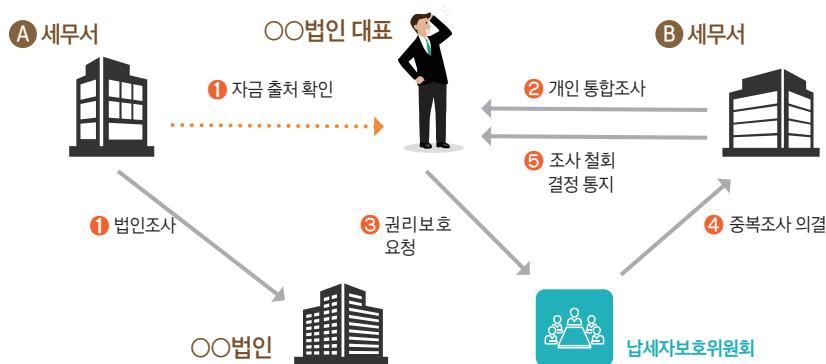
- (주)OO이 일부 거래처를 대상으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판매부대 비용으로 계상
- A 지방청은 (주)OO이 일부 거래처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'접대비'이며 명백한 세금 탈루 행위로 보아, 다른 과세기간에도 동일·유사한 세금 탈루 혐의가 있을 것으로 의심
-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후 요청인의 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을 3개 사업 연도로 확대 결정

###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결과

(주)OO의 판매장려금을 접대비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다툼의 소지가 상당하고, 명백한 조세 탈루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세무조사 범위 확대 결정을 취소할 것을 의결

## 사례 2

○○법인 세무조사 시 대표자의 금융계좌 확인 등 사실상 대표자까지 조사하였으므로, 그 외 명백한 탈루 혐의 없이 ○○법인 대표를 개인 통합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중복조사임



### 요청인의 심의 요청 내용

- A 세무서가 ○○법인의 2010~2012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 시 대표자의 외화 입출금 금융 거래 확인
- B 세무서가 ○○법인 대표자를 해외소득 신고 누락 혐의로 동일 과세기간에 대해 개인 통합조사 착수
- 법인 대표자가 해당 조사를 중복조사라고 주장하며 권리보호 요청

###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결과

A 세무서가 ○○법인 세무조사 시 대표자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해 직접 소명을 요구하고 매출 누락으로 과세한 것은 사실상 ○○법인 대표자의 금융거래를 확인한 것이며, 이미 확인된 사항 외에는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으므로 중복조사로 의결